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(유)한국비엠에스제약, 대표:김진영 귀하 (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(대치동,해성1빌딩))
(경유)

제목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[(유)한국비엠에스제약,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(다클라타스비르 염산염)]

1. 귀사에서 2019.11.25.자로 우리 처에 제출하신 의약품 수입품목 “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(다클라타스비르 염산염)”(접수번호 : 20190184571)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약사법」 제42조에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「약사법」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, 허가증은 우리 처 고객지원담당관(연락처 : 043-719-1010~14, 팩스 : 043-719-1000)에서 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제품명	변경항목	변경허가내용	비고
다클린자정60밀리그램 (다클라타스비르 염산염)	사용상의 주의사항	- 최신 안전성 정보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	사전검토 완료

2. 아울러 본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불임의 ‘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’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불임 1.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증 1부(별첨)
- 2. 거부처분 이의신청서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심사관 **엄숙현**

연구관 **도원임**

기술서기관 **오정원** 전결 12.19

시행 **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(의약품)-11021** (2019. 12. 19) 접수 20190184571 (2019. 11. 25)

우 28159 **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/** www.mfds.go.kr
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

전화 043-719-2323 전송 043-719-2300 / sook2vm@korea.kr / 비공개(7)

[붙임 2] 거부처분 이의신청서


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- 수수료: 없음

거부처분 이의신청서

제출서류: 없음

접수번호:

접수일:

처리기간: 10일

1. 신청인 정보

신청인

이름(법인명):

연락처:

주소(소재지):

2. 신청 내용

이의신청 대상
민원사항

거부처분을 받은 날

거부처분의 내용

이의신청의
취지 및 이유

3. 서명 및 날인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접수기관 귀하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